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217 발의연월일: 2025. 4. 29.

발 의 자: 박상웅 • 권성동 • 윤한홍

박준태 · 김도읍 · 박덕흠

강승규 • 이인선 • 곽규택

김미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,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100%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%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인력 부족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동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근로자의 주거 및 정착을 위한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인구 감소지역의 기업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75조의 5제2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인구감소지역"을 "인구감소지역 (이하 이 조에서 "인구감소지역"이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1년"을 "1년(제2항에 따른 취득 중 「건축법」에 따른 신축을 위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2년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전단 중 "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"을 "인구감소지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
- ②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.
- 1.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.
- 2.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만 해당한다)에 대해

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,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75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75조의5(인구감소지역에 제75조의5(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한 감면) ①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감면) ① -----특별법」에 따라 지정된 인구 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감소지역(이하 이 조에서 "인 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구감소지역"이라 한다)-----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(기 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세를 감면한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②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. 1.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세를 면제한다. 2.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 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202

-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정한다.
- 1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 부터 <u>1년</u>이 경과할 때까지 해 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는 경우
- 2. (생략)
- ③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<u>「인구감소지역 지원</u>특별법」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「지방세법」 제

<u>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</u>
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만 해
당한다)에 대해서는 재산세
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
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
며,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
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
1
<u>1</u> 년(제2항에 따른 취득
중 「건축법」에 따른 신축을
중 「건축법」에 따른 신축을 위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 취
위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 취
위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 취
위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 취
위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 취 득일부터 2년)
위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 취 득일부터 2년) 2. (현행과 같음)
위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 취 득일부터 2년) 2. (현행과 같음)
위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 취 득일부터 2년) 2. (현행과 같음) ④

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 택을 유상거래(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)로 취득하는 경우에 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 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 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.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 ⑤ 제4항-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 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 · 증여 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를 추징한다.